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0월 30일 (금)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
2.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4) ····· 2면
2.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5) ····· 8면
3.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3)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11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6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4)

(14시 02분)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사무처장 이경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 중에도 충청광역연합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 위임 또는 이관 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권 광역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광역 BRT 건설 운영을 위해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연합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충청광역연합으로 위임·이관된 광역 BRT 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한 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광역 BRT 건설·운영 및 운송 사업 면허 등 관련 절차와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광역 BRT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광역 BRT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방비 분담·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광역 BRT 관련 주요 정책과 조정, 갈등 해결 및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광역 BRT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의 위임 및 이관 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사무 및 계획 수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정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 초광역건설환경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광역 BRT 관련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관련 권한이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임·이관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 BRT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건설·운영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관련 사무를 충청광역연합이 직접 수행하게 된 만큼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운영 기준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협의체 규정은 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고, 관련 기관의 필수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원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광역 BRT 관련 위임·이관 사무의 처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체나 광역교통 현안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 등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신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맨 아래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역 BRT 노선의 건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련된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지금 세부적으로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세종과 공주 구간 1단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인데, 재원은 세종과 공주가 5 대 5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2분의 1 중에 3과 7을 도비와 시비로 나눈다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어요.

분담금에 대한 이견 조정은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다자간의 협의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집행부가 단독으로 구성함에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지자체들이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또 충청광역연합이 전체적인 마스터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형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견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체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는 “누구 누구로 한다” 위원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하고, 각 시도의 관련 교통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세종·공주이기 때문에 세종과 운영하게 되는 세종교통공사와 공주시와 충남도 그다음에 광역연합, 이렇게가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당사자인데, 향후에 우리가 2단계로 청주하고 들어가고, 또 천안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해관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건 상정 하기 전에 충분히 기관 간 협의를

하여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지난번에 —행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BRT 노선 정류장 신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공주보다는 세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 언론에서도 관련된 시민들의 원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5 대 5 분담에 대해서도 세종에서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과연 했는가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진행 과정에 개선이 되어질 거라는 건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데요, 시행규칙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이순열 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만약에 처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만약입니다.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이번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BRT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광위에서 위임받은 사항도 있고 4개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사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광위에서 저희한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BRT 특화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의 교통 체증, 그러니까 전용 차선이다 보니 그런 애로 사항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교통 체증이 제일 우려되는 곳이 경계 지역 아니겠습니까? 세종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처음에 조사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이 생김으로써 개별 교통에서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아 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그러면 공사 준공만 해 놓고 결국 그 도로는 일반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협약도 문제이고, 대광위에서 우리한테 시범적으로 준 부분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잘해야만 향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작은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제안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충청광역연합으로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이순열 위원** 이후 질문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처장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언제까지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있어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실질적으로 협약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완료가 됐고, 저희가 협약서 작성하고자 하는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협약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내년에 시범 운영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례가 없으면 협약이 안 돼요, 혹시? 협약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지 않으면 사업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공포를 해야 되니까— 공포할 수 없고 연말까지는 진행이 안 되면 어쨌든 그 이후의 로드맵들은 다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됐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 좀 되셨겠네요. 그렇죠?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유인호 위원** 아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얼마큼 진행됐느냐,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얼마큼 진행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몇 %, 과반이냐 80%냐 70%냐, 유추 가능하게 일이 얼마큼 진행되어졌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단계별로 최장선이 구체화가 되어질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협의체 설치를 하시는데 협의체를 설치하는 거는 일단 강행 규정이에

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일단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조례안 12조, 13조 보시면 돼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성 시도의 교통 담당 국장 및 교통 전문가 해서 포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몇 인 이내로 구성을 할 것인지 구체성을 가지고 조례에 담았으면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결국 해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4개 시도가 같이 어쨌든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충청광역연합의 사무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구체성을 띠어서 같이 명시되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답변도 그렇고 내용도 약간의 궁금증이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정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지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라고 답을 줘버리시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 주셨나? 나 모르겠네?

설명 드리셨어요?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제가 기초 설명은 직원님들을 통해서 한번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협의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관련 내용이 성안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BR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쭉 킥오프 회의도 하면서 실무협의회를 죽 운영했었기 때문에 BRT 사항과 관련해서는 4개 시도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비용 문제라든지 구간 문제라든지 협약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하게 됐다고 보여져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실무 회의를 거쳐서 성안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시행규칙안은 나온 거 있을까요?

조례 제정되면 바로 시행규칙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초안이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담았던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갖고 계실까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지금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고요, 성안이 된 거는 안을 작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무협의회를 8차까지 했고, 여기에서 의견들을 저희가 담아서 협약 구

체화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협의체 관련해서는 각 의견이,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시행규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구체화 된 거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시거나 아직 안 만들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필요하면 개정이라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일 자체가 충분히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상적인 느낌보다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5)

(14시 24분)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성 연합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역 BRT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관리·운용, 존속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결산상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 BRT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보조금·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등 관련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광역 BRT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리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 초광역건설환경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정 사업이나 특정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BRT 사업은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등 별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의 무분별한 전입·전출은 지양되어야 하고, 특히 조례안 제7조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요건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과 재정 운용상 필요한 경우와 같은 요건은 해석의 여지가 넓으므로 규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여 특별회계 신설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신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 제4조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재원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 광역 BRT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확정된 게 있나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원금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시설 하는 시설비는 있습니다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경기의 M1 버스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받고 있는데, 현재 BRT 운영하는 데에서는 국고보조를 지금 한 곳도 준 적이 없다고…….

○**이순열 위원** 광역 BRT가 처음이니까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없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7년도 ’28년도는 추계치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을 예정이고요, ’28년도 말에는 원가 분석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BRT 이 정도 운영했을 때 원가가 얼마나 듭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고, 저희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두어 차례 찾아 뵙고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운영과 관련된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임의 규정은 있고요…….

우리 충청광역연합의 적극적인 영업 실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치원 구간도 재원 부족으로 —시설은 다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미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끼쳤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그간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려면 운영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만의 부담금으로는 힘듭니다.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영업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43)

(14시 32분)

○**위원장 조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성 연합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연합사무처장 이경성입니다.

이어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결산서 56쪽입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 예산 현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충청권 초광역 UAM 도입 방안 연구 1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충청권 초광역 UAM 도입 방안 연구용역비 8,800만 원과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

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 정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섭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 초광역건설환경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10월 2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총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억 3,083만 원 중 58.1%인 1억 9,225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3억 3,083만 원 중 8%인 2,657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건 1억 1,200만 원으로 충청권 초광역 UAM 도입 방안 연구용역의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억 3,080만 원 중 58.1%인 1억 9,225만 원을 지출하고 33.9%인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인 2,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청광역연합 전체의 불용률 19.4%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예산 현액의 33.9%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만큼 이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대체로 준수한 편이지만,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2,000만 원 중 217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향후에는 소요 예산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 중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등 예산 조정이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중근** 신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심사 관련해 집행 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4,800 이거 집행하신 거요, 집행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뭔지?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청년 농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중근** 예, 청년 농부.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네트워크 원래의 사업에는 4,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좀 있었고요, 또 작년이 첫해이다 보니 사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한 부분도…….

○**위원장 조중근** 과다하게?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실무 회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인쇄를 하거나 이런 거를 고려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절감이 됐고,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성이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줄여서 3,000만 원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는 할 건데,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번 결산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중근**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신다는 거죠? 결산이 아니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위원장 조중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자료가 와야…….

(자료 전달)

○**위원장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행감 때 다 말씀을 나눴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포지션이 17% 정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예산 대비 8% 정도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한 30% 가까이, 31% 정도가 불용액이라 말씀 주신 것처럼 추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계는 잘 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예상했던 참가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사실 정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주신 서류만 놓고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궁금했던 거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나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목표치의 성과는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지 그 판단 속에서 불용액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가 일단 궁금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27년도 본예산에도 수립을 할 텐데 올라올 때 그런 분석들,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왜 목표 대비 적게 참석을 했고, 아니면 애초에 이것밖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만큼 잡았던 건지, 어쨌든 나름대로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27년도 본예산은 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나름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잘했다, 못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잡기에는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해 봤으니까 해 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27년도에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행감 때 충분히 나눴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주신 말씀을 저희가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청년이 대표성을 가진 4-H라든지 농업 후계자 이분들 간의 네트워크보다 실질적으로 청년 농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이런 장터 개념으로 내년에는 하면서 농산물을 사고팔고 하는 것만 할 수는 없고, 그거의 의미는 다른 장터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사이에 —그분들이 내년에 회의를 해 봐서 의견을 반영해야 알겠지만—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해 보려는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두 번째인데 나름대로 성과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2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거는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 사무처장님, 청년 농업인들 이 부분은 어떤 선정 기준이…… 시도별 단체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오는 거예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 위원** 글쎄요, 추가로 이 이외에도 그런 데 가입 않고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저는 전문 어업이니까 어업 규모는 10%도 안 되고 몰라서 안 들어오거든요.

농업하고 또 어업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해가지고 시도별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업은 충남만 해당이 되는데, 어업인들도 들어오십니다.

○**편삼범 위원** 왜 충남만 돼요? 충북 내수면도 있는데.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내수면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어업 쪽으로는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추천이 잘 안되고 있고, 어업 쪽으로는 추천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삼범 위원** 올 11월 달에 워크숍 있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11월 5일, 6일 하기로 했습니다.

○**편삼범 위원** 그때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60명 정도로 할 거 같습니다.

○**편삼범 위원** 60, 좀 늘었네요? 1차 명단에는 57명? 57명 중에서 어업인은 5명…….

또 이게 여기에만 들어와 있지 실질적으로 크게 생산이라든가 농업 규모에 대한 생산량 예를 들어서 또 수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청년농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거는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쪽에서 자료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광역에서도, 연합에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조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8분)

○**위원장 조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초광역건설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편삼범 조중근

○**청가 위원(3인)**

김종필 이한영 정재우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정섭

○**출석 공무원**

연 합 사 무 처 장 이경우

초광역건설환경과장 김태훈